

고시

11/27
고시제 113호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모의 415 1900 (전화번호 318)	전결규정	조항 전결사항
처리기관	재외부시장	시	
시행일자			
보존년한			
보조기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1972.11.27 시장실	협 번무과장 (영남대학교)
	도시계획과장		시민과장
	가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종합계획과장
기안책임자	송운석 72. 11. 16	조	지역계획과장
경유수신참조	각안참조	발신	통제

제 목 서울 도시계획 화물자동차 정류장 (경인) 시설결정

제 1 안

수 신 내 부 결 재

1. 당시 관내 화물자동차 정류장은 현재 소규모의 화물터미널이 도심부에 산재하여 있고 규모가 적어 유통업무에 지장이 많고 교통혼잡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대안외 화물자동차 정류장을 부도심권에 유착하여 유통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할 목적으로 기리정부고속도로 방면 (영동지구)의 화물자동차 정류장은 서울특별시

정
서
관
인
발
송

0201-1-8A

196mm X 268mm 배상지 40g/㎡

1969. 11. 10. 승인

136

194

제 53호 (72. 4. 25) 로 시설 결정의 되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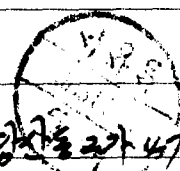
2. 경인 지방의 화물 자동차 정류장에 대하여 영등포구 당산동 2가 47-2 번지의 4 필지상에 별첨과 같이 시설 결정 요청이 있어

당시 제 13차 (72. 9. 27) 도시계획 위원회에 부의한바 별첨 회의록과 같이 의결되었으나 화물 자동차 정류장 시설용지에 적당토록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신청코자 건설부장관에게 용도지역 변경 요청 하였으나

3. 별첨 도시 45-19453 (72. 11. 9) 호의 화물 자동차 정류장은 용업 지역에는 설치할수 없다는 도시예규 제 6호 (72. 11. 9) 의 본문 안시 규정에 의거 제 13차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 사항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 조와 용법 제 10 조 및 동시행령 제 6 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결정되코자 합니다.

4. 시설 표시

시 설 명 칭	키	키	변	적	비고
경인 화물 자동차 정류장	영등포구 당산동 2가 47-2 의 4 필지	16.024	8	4856	



제 2 안

고 시 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 13 조

도시계획시설 (화물자동차 정류장) 결정

고시안심사	1972. 11. 18	제 176	호
심사자	법제계장	법무과	장

Handwritten signature and official seal.

1.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화물자동차 정류장)은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코자 한다.

2. 관계 도시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영등포구 도시계획법 제 13 조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된 바와 같이 결정되코자 한다.

4. 관(시)보에게 건영 : 의계혁신실(화물자동차정류장)결정

다. 법적 근거 : 의계혁신제 12조 및 제 13 조.

첨부 괴문사본 2매

제5안

수신 영등포구청장

발신 시장

재목 동 건

1. 귀관내 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 용지를 별첨 괴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괴라영기 흥보하니 관계도면 정리하는 등시 의계혁신 업무추진에 참고 받으실 수 있.

첨부 괴문사본 및 도면

제6안

수신 은수행정과장. 시민과장

발신 과장

재목 동 건

1. 양시 관내 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 용지를 별첨 괴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결정}괴라영기 흥보하니 귀관 관계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괴문사본 및 도면.

제7안

수신 시내 영등포구 당산동2가 44.번지 권밀 화물 김 상 계

재목 동 건

1. 귀관내 제출하신 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 ^{결정}용지에 대해 귀부 귀의와 같이 시설 결정의 의의등을 알려 드립니다. 끝.



도시계획국 (72.10.10) 1972. 1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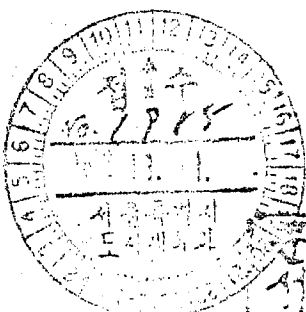
수신 서울특별시청

제목 서울특별시청 송포지역 환경개선사업

- 1. 도시 415-1656 (72.10.10) 의 외산입.
- 2. 화물자동차 정류장 설치에 관한 송포지역 환경개선사업
이른 범위 자동화 정류장 시설 위치 결정 지침에 따라 처리하도록
관리하시느니 분 업무 수행에 착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첨부: 1. 도시 415-1656 (72.10.10) 사본 1부.

2. 도시 415-1656 (72.11.9) 1부. 끝



검수	서울특별시청	장관
일시	1972. 11. 10	
장소		
비고		

이경호

서울특별시청

- 140 -

제	1972. 11. 10	일	1972. 11. 10	장	장관
비고			1972. 11. 10		

수신 건설부장관

제목 서울도시계획 과금 자동차 정류장 시설 결정의 따른 용도
지역 변경

1. 당시국내 과금 자동차 정류장은 현재 소규모의 과금 시설을
소각 도심부에 산재하여 있고 규모가 적어 유통업무에 지장이 많고
교통혼잡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대량의 과금 자동차 정류장을 우
도심권으로 유치하여 유통업무의 개선에 도모하고 교통혼잡을 해소
할 목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양면의 과금 자동차 정류장을 영등지구
에 기이 결정된바 있고,

2. 경인지방의 과금 자동차 정류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 13
차 도시계획위원회 (72.9.27) 에서 의결된바 있으나 본 지역은 용
도지역이 준공업 지역임으로 과금 자동차 정류장 시설용지에 포함
토록 우선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한후 과금 자동차
정류장으로 시설 결정토록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 변경 요청하오니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조속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용도 지역 변경 조서

구분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주거지역	389,726,566		389,726,566
상업지역	17,402,570	(+) 33,600	17,436,170
준공업지역	50,747,000	(-) 33,600	50,713,400
녹지지역	262,999,864		262,999,864

- 141 - 201

- 첨부 : 1. 제 13차 도시 계획 위원회 의회록
2. 도 권, 공.

서 읍 목 법 사 장

국 민 심 부

도시 415-17203

(70-4028)

1972. 10. 9.

수신 수신처 코드

제목 자동 화평투표장 시설 위치 검정 지침 서답

(도시이규 제 6호 : 72. 11. 9)

도시 415-17203 (71.11. 2)로 서달한 자동 화평투표장 시설
위치 검정 지침 제 1항 본문에 다음 사항을 단서로서 추가하
여야 수행이 가능 되기 바랍.

다 음

다만 좌측 자동 화평투표장은 공업지역에도 설치할수 있음. 함.

기안용지

분류기호 서번	도시 415 - 16	(전화번호 318)	검열부 조항 감경사항
처리기간	제2부시장		시장
시행일자	로		[Handwritten Signature]
보유년월			
근	도시계획국장	[Handwritten Signature]	합
주	도시계획과장		종합계획계장
기	가로계획계장		지역계획계장
관			
기안책임자	송운석	70. 10. 6	조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발 신	통 제
제목	서울 도시계획 화물 자동차 정류장 시설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제록	동건		
	204		
<p>1. 당시 관내 화물 자동차 정류장은 현재 소규모의 화물 취급 소가 도심부에 산재하여 있고 규모가 적어 유통 업무에 지장이 많고 교통혼잡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대단위 화물 자동차 정류장을 부도</p>			



정
송

심권에 유치하여 유통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할 목적으로 기히 경부고속 도로 방면 (영동지구)의 화물 자동차 정류장은 서울 특별시 고시 제 53호 (72.4.25)로 시설 결정 되었으며.

2. 경인 지방의 화물 자동차 정류장에 대해서 영동포구 당산동 2가 47-2 번지 외 4 필지상에 천일화물 김상제로 부터 시설 결정 요청이 있어 당시 제 13차 도시계획 위원회에 부의한바 별첨 회의록과 같이 의결 되었으나 우선 화물 자동차 정류장 시설 용지에 적합토록 ~~용도지역~~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선행코저 건설부장관에게 용도지역 변경 요청코저 합니다.

제 2 안

수신 건설부장관

제목 등 건

1. 당시관내 화물 자동차 정류장은 현재 소규모의 화물 취급소가 도심부에 산재하여 있고 규모가 작아 유통업무에 지장이 많고 교통혼잡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대단위 화물 자동차 정류장을 부도심권으로 유치하여 유통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할 목적으로 경부고속 도로 방면의 화물 자동차 정류장은 영동 지구에 기히 결정된바 있고.

2. 경인지방의 화물 자동차 정류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 13차 도시 계획 위원회 (72.9.27)에서 의결된바 있으나 본지역은 용도지역이 준공업 지역임으로 화물 자동차 정류장 시설용지에 적합토록 우선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한후 화물 자동차 정류장으로 시설결정코저 다음과 같이 용도 지역 변경 요청 하오니 본사건의 시급성을 가약 조속 거절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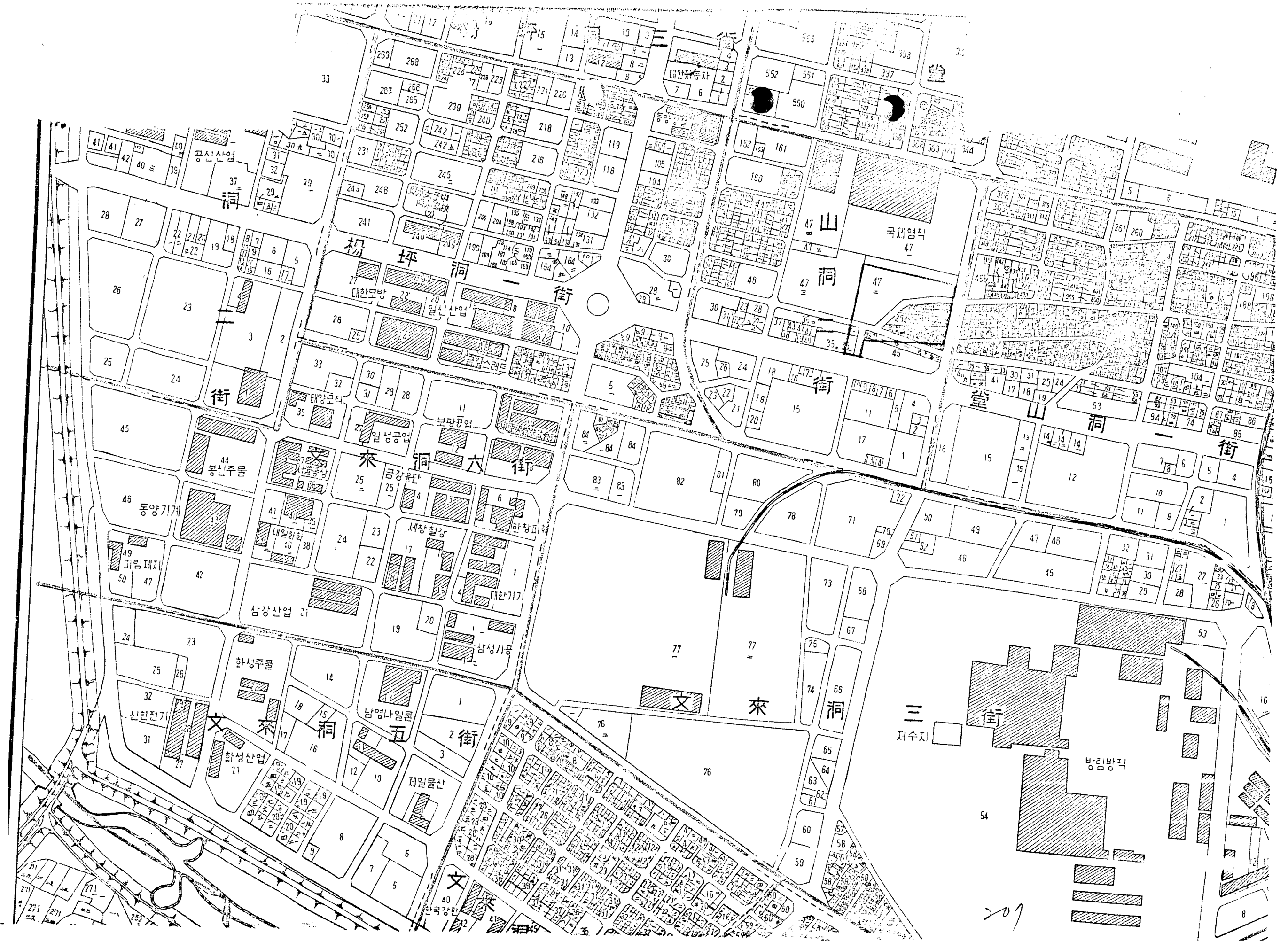
주시기 바랍니다.

3. 용도 지역 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비 고
주거지역	389,726,566		389,726,566	
상업지역	17,402,570	(+) 33,600	17,436,170	
준공업지역	50,747,000	(-) 33,600	50,713,400	
녹지 지역	262,999,864		262,999,864	

첨부 1. 제 13 차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록

2. 도면. 끝.



209

28

72.9.27.

도시계획위원회
제 13 차 회의심의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209

144

목 차

一.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22.9.1) 회의록요약 — 3

二. 제13차(22.9.27)도시계획위원회부의안건 — 23

1. 학교용지 시설결정 ————— 25

2. 용도지역지구일부변경 ————— 29

3. 공원일부변경 ————— 33

4. 시장시설 결정 ————— 41

5.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구역 및 시설일부변경 — 61

6. 시외버스정유장 및 화물트럭터미널 시설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 ————— 67

7. 철도(전차기지) 시설결정 ————— 69

8. 미판지구 결정 ————— 73

二. 제13차(72.9.27) 도시계획
위원회부의안건

~23~



결 의 번호	
결 의 년월일	1972. 9. 27
	제 13 회

결 의 사항

시외 버스 정류장 및 화물드럭 터미널
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변경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회 결 의 안 건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제 출 년월일	1972. 9. 27

6 시외 버스 정유장 시설 결정 및 화물 트럭 터미

널 부지 응도 지역 변경과 시설 결정

가. 시외 버스 정유장 시설 결정

1. 결의 주문

시외 버스 정유장 시설 결정에 대한 부의 안건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가) 버스정유장 설정조서

위 치	면 적	비 고
성동구 성수동 1가 670-14호 외 17필지	4.620 [㎡] (1,400평)	시외버스 정유장

2. 현황 및 설정 목적

가) 현 황

(1) 위치 : 성동구 성수동 1가

(2) 면적 : 4.620[㎡]

~64~

(㉔) 현황 : 본지역 일대는 상급지역으로 성동교에서 천호동 방면도로와 강변도로 교차점 부근임.

나) 설정 목적

시내 운행거리가 과다히 연장된 여주, 이천 방면 운행 시외 BUS 에 대하여 수도권내에 정유장을 입지시켜 도심 교통혼잡을 완화하여 교통취리에 기여코자함.

나. 정인(가칭) 화물 추력 터미널 시설 결정 및

응도지역 변경

결의주문

정인화물추력 터미널 시설 결정에 대한 부의안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가) 복물추락 특미갈 설정조사

위 치	면 적	비 고
영등포구 정산동 2가 44	16.024 ⁸ ㎡ (4.856 평)	경인복물추락 특미갈 (가칭)

나) 용도지역 변경조사

구 분	기정 (㎡)	변경 (㎡)	변경후 (㎡)	비 고
주거지역	389,126,566		389,126,566	
상업지역	17,402,570	41 33,600	17,436,170	
준공업지역	50,749,000	(-) 33,600	50,713,400	
녹지지역	262,999,864		262,999,864	

2. 현황 및 설정목적

가. 현황

(1) 위치 : 영등포구 당산동 2가 44

(2) 면적 : 4,856 평

(3) 현황 : 현재 시내에 34 개소의 화물 취급소가 도심부에 산재되어 있는뿐 아니라 규모가 작아 유통 업무에 지장이 많고 도심교통 혼잡의 요인이 되고 있음

나) 설정목적

1. 이상과 같이 산재한 화물 취급소를 병합별로 통합하는 원칙이래 경부 (영등지구—서초동) 경인 (부성, 양평지구), 경춘 (행랑리, 중랑교지구) 문산 (불광지구) 망명동 4개지구 등으로 통합운영하여 유통 업무를

개선하고 도시교통 혼잡완화를 기하고저 하며

2 상기 통합원칙에 따라 기하 시설 결정된

정부방면의 서초동 터미널에 있어 경인행선

의 당산동에 화물 터미널을 입지시키므로

경인간 화물차리의 신속을 기하고자 함

1972.9.27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218

제13차 회의 요약

안건1: 학교용지 시설 결정

- 가. 중앙중학교 (중회동 64-2 외 18필지)
원안가결 통과
- 나. 북상계국민학교 (상계동 1014외 3필지)
다음 회의에서 속행키로 결의됨
- 다. 남봉천국민학교 (봉천동 24외 8필지)
원안가결 통과

안건2: 응도지구 일부 변경

별첨 도별표시와 같이 원안 일부 추가
가결 통과

안건3: 공원 일부 변경

- 가. 능동공원 (서울린추리크럽)
원안 가결 통과

나. 청량리공원 (회기동상 4-49)

원안 가결 통과

다. 남산공원 (예장동 산 5-8)

원안가결 통과

라. 북아현 제1공원 (북아현동 210)

원안가결 통과

마. 삼정공원 (삼정동)

원안 가결 통과

안건 4 : 시장시설 결정

가. 동부시장 (오금동 186 외3 필지)

다음회의에 속행키로 결의됨

나. 공덕시장 (공덕동 256-10)

원안 가결 통과

다. 잠키시장 (잠키동 150-5 외 5필지)

다음 회의때 속행키로 결의됨

라. 서하상가 (올지로 1가)

원안가결 통과

마. 영안시장 (회곡동 341-69 외 5필지)

원안가결 통과

안건 5: 일타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역 및 시설 변경

가. 현충릉부주택단지 (중곡동 150-2 외 8필지)

원안가결 통과

나. 연희주택단지 (연희동 산 1147 외 1필지)

원안가결 통과

안건 8: 시외버스 정류장 및 화물트럭

터미널시설 결정 및 응도지역 변경

가. 시외버스 정류장 (성수동 1가 620-14 외 7필지)

원안가결 통과

나. 경인(카칭) 화물트럭 터미널 시설결정 및

응도지역변경 (당산동 2가 44)

원안가결 통과

안건 7: 철도(전차기지)시설 결정 (영등포구

구로동

원안 가결 통과

안건 8: 미곡지구 설정

원안가결 통과

최국장(전영등포구청장): 본 안에 대하여 편주민들은 관심밖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제시장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신부위원장: 본안에 따른 의견들은 없으신지 없으시면 원안 가겠습니다.

안건 5.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역 및 시설 변경

가. 한전 동부주택단지(중곡동 150~2외 8필지)

도시계획국장(대) 제안설명(생략)

이성욱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 밖이죠

도시계획국장(대): 네 밖입니다.

장훈위원: 사업 기간은 지장없는지

도시계획국장(대): 네 준공기한은 연기돼 있습니다.

강태옥상임위원: 공공 용지는 종면적의 3% 인출하는데

도시계획장(대) : 67년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신부위원장 : 한 의견들은 없으신조 없으시면 원안 가결
합니다.

가. 연희 주택단지 (연희동 114-7 외 1필지)

도시계획국장(대) : 제안설명 (생략)

신부위원장 : 별 이의가 없다고 모는데 한 위원님들
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일동 : 동의

신부위원장 : 그럼 원안대로 가결합니다.

안건 6 : 시외버스 정류장 및 화물트럭 터미널
시설결정 및 용도 지류변경

가) 시외버스 정류장 (성수동 1 카 670-42외 11필지)

도시계획국장(대) : 제안설명 (생략)

이성욱위원 : 도심교통의 완화를 기하는 면에서 교외지로

이동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장훈위원 : 침수지역이 아닌지

도시계획국장 : 그런 지역은 아예 잘 압니다만 시설물을 신

축할 때 고려하겠죠

신부위원장 : 본 안에 대하여는 별 이의가 없는 줄 아

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위원 원동 : 동의

신부위원장 : 그럼 본안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가. 정인(가칭) 화물트럭 터미널 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국장(대) 제안설명(생략)

이성욱위원 : 교외 분산계획중 일환이기 본안은 좋은
일이군요.

강태우상임위원 : 구도와 신도로가 통과되는 위치군요

도시계획국장(대) : 네 그렇습니다

신부위원장 : 본 안도 원안대로 가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일동 : 동의

문류기호 분서번호	92 415	(전화번호 75-6593)	전송하인 " 7 아침	전달사항
처리기간	9. 8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시행일자	9. 11	9월 9일	9월 9일	
보급년월				
보급 구 계 관	가도계획계장	부	협	경호계획계장
기안책임자	송윤석	조근호	조	
경수 합 계	시비영등포구청 경안화동 김상래	2가44	발 신	통 계
제 목	화물정류장 시설 결정 (설치장소 등도지정) 신청			
<p>1. 귀하께서 제출하신 화물정류장 시설 결정 신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사항이므로 본관 처리에 상응한 시설이 요해가므로 귀하의 정리를 주유통로하여 드려졌으며 그리 마시기 바랍니다. 끝</p>				
				227
				163
				남 송

각 시

1.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2가 45
2. 명 칭 영등포 지구 공용 화물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정류장법 제4조에 의하여 위 장소에 공용 화물 자동차 정류장 설치 편허 신청서를 제출하는바 이후 위 장소가 도시 계획 또는 공해 방지상에 지장이 있어 당국에서 타 장소로 이전 명령이 있을시는 즉각 당국 지시에 순응 할 것을 약속하고 자에 각서 제출 합니다.

서기 1972 년 7 월 일

신청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
명칭 영등포지구 공용화물자동차 터미널
대표자. 김 상 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54의 10

대 7평 1구

등 소 2가 49의 2 V

대 3,150평 7층

등 소 2가 36의 1 V

대 97평 1층

등 소 2가 35의 1 V

대 116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54의 10

대 1,757평

의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로서 귀하가 증번 영등포
지구 화물과동차 터미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을 확실히 동의 승락함

서기 1972년 3월 2일

대구시 덕산동 출회 6번지

의 승락인 (소유자) 이 석 준

서기 1972년 월 일생

서울특별시 성북구 증암동 166-

김 상 제 귀 하 230